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허영·이해식·박상혁
박정현·박정·홍기원
한민수·김영환·김태선
박용갑·박균택·주철현
소병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,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.

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, 분산된 징수·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.

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법적

일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.

이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81조의2).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2의 제목 “(수수료)”를 “(응시수수료의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”를 “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,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의 개정규정은 관련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정비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하되, 공포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조(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2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1조의2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, 정비 전까지는 이 법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의2(수수료)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<u>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</u>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.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	제81조의2(<u>응시수수료의 면제</u>) ① ----- -----<u>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후단 삭제></u>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,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